

외국대학 연수 취득학점 인정에 관한 시행세칙

제1조 (목적) 이 세칙은 학칙 제39조 제7항 및 제6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재학기간중 외국 대학에서의 자비연수와 취득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(개정 2009.9.23)

제2조 (적용범위) 이 세칙은 정규 학기 및 계절학기 자비 유학과 어학연수의 경우에 적용한다. (개정, 2006.3.6, 2014.12.23)

제3조 (연수대상) 연수대상은 외국대학의 정규과정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어학 연수는 학기단위(계절학기 포함)로 진행되는 대학부설어학원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.

제4조 (기간) 연수기간은 최대 1년(2학기)으로 한다.

제5조 (연수 및 자비유학 신청) (조명칭 변경 2013.5.20) ① 정규학기 자비유학 신청자격은 성적 평점평균이 3.0(B0)이상인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하며, 파견 학기 동안에는 반드시 재학생이어야 한다. 다만, 졸업예정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. (개정 2007.3.6., 2009.9.23., 개정 2013.5.20)

②자비유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대학 유학생 지원서(별지 제1호 서식)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및 소속학과(부)장의 확인을 거쳐 소속대학 행정팀에 제출하고,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(개정, 2007.3.6., 2013.5.20, 2014.4.30)

1. 외국대학 입학허가서
2. 학기별 성적조회표
3. 지도교수 추천서

③전항의 경우 연수대학, 정규과정등의 적합여부는 소속학과(부)에서 판정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(부)장이 추천한다.

④어학연수 학점인정 신청은 국제협력처로 연수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적합여부를 판정받는다. (개정 2013.5.20)

⑤ 계절학기 자비유학 신청자격은 성적 평점평균이 2.0 이상인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 한다. 다만, 졸업 예정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.(신설 2014.12.23)

제6조 (수학허가) ①자비유학은 소속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.
(개정, 2007.3.6)

②어학 연수는 국제협력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허가한다. (개정 2013.5.20)

제7조 (등록 및 학기의 인정) ①정규학기(계절학기 수학 및 어학연수는 제외)수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유학기간을 본교의 등록학기로 인정한다. (개정, 2007.3.6)

②자비유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해당 기간 동안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재학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하며, 졸업해당 학기는 반드시 본교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다만, 편입생일 경우 본교에서 2학기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. (개정, 2007.3.6, 2014.12.23)

③(삭제 2014.12.23)

제8조 (학점인정) ①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본교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처리한다.

②매학기당 학점인정은 최대 20학점까지이며, 1년간 최대 40학점까지만 인정한다.

③계절학기는 학기당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. (개정, 2007.3.6)

④어학연수의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최대 3학점까지 인정한다.

제9조 (학점인정기준) ① 학생이 연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(학점)은 본교에서 취득한 성적(학점)과 동일하게 인정하고, 주전공 및 제2전공, 부전공의 전공학점(전공핵심 또는 전공심화), 교양학점, 일반선택학점으로 구분하여 인정하되, 제2전공 및 부전공의 성적 인정

은 파견전 확정된 학생에 한 한다. 또한, 취득한 성적(학점)은 평점평균 (G.P.A.) 환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으며, 전체 취득학점에만 포함한다.(개정 2009.9.23)

②파견대학에서 이수한 과목 중 성적이 Pass와 Satisfactory는 성적(학점)으로 인정하며, Non-pass와 Unsatisfactory로 처리되었거나, 청강한 과목은 성적(학점) 인정시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③본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(유사과목 포함)의 학점취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제10조 (학점신청) ①외국대학 이수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연수 유학생 인정학점 신청서(별지 제2호 서식)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과(부)에 심사를 의뢰한다. 소속학과(부)에서는 3인 이상의 전공교수가 이를 심의하여 성적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대학으로 신청하고, 해당대학 학장은 서류 확인후 교무처(교무입학처)에 성적인정을 요청한다. (개정 2012.11.23)

1. 외국대학 성적증명서

2. 학점인정 방식 및 수강교과목 개요서(번역문 포함)

②어학연수 학점 신청은 연수 종료 후 즉시 전항의 신청서 및 전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제협력처에 심사를 신청하여 교무처(교무입학처)에 성적인정을 요청한다. (개정 2012.11.23., 2013.5.20)

제11조 (성적표 표시) 연수대학에서 취득한 성적(학점)은 해당대학과 협의하여 교양학점, 전공학점(전공핵심 또는 전공심화)과 일반선택 학점으로 구분하여 사정한 후 인정하며 성적표기 방법은 별표와 같이 한다. (개정 2009.2.21)

제12조 (보칙)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협력처장이 내규로 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4.12.23)

부 칙

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2002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5.1.25 변경)

(시행일) 이 변경세칙은 2005년 3 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7. 3. 6. 변경)

(시행일)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2. 21 공포)

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9. 23공포)

(시행일) 이 세칙은 2010학년도 신청자부터 적용하며, 이전 신청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(2012.11.23 공포)

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5.20 공포)

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4.30 공포)

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4.12.23 공포)

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별 표 >

0000학년도 0학기			
기간 : 0000년 00월 00일 - 0000년 00월 00일,			
국가명 : Maryville College 단기유학생			
교과구분	과목명	학점	성적
교양	000	00	00
일반선택	000	00	00
전공핵심	000	00	00
전공심화	000	00	00

<별지 제1호 서식>

외국대학 연수 유학생 지원서

소 속 : 대학 부
학 번 : 학년 /기수
성 명 :
주민번호 : -
주소 :
전화번호 :
유학국가 :
유학기관(대학명):
구 분 : 한 학기(), 두 학기(), 계절 학기(), 어학 연수()

본인은 유학생으로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본인 : (인)
보호자 : (인)
(보호자 연락처 :)

지도교수	학과장

대학장 귀하
국제협력실장

● 구비서류: 1. 입학허가서 1부 2. 성적증명서 1부 3. 지도교수 추천서

● 업무흐름 안내

- 정규학기, 계절학기 지원서류 작성(학생) → 수학능력 및 적격자 심사 (학과 및 대학) → 승인(교무처)
- 어학연수지원서류작성(학생) → 수학능력 및 적격자 심사(국제협력실) → 승인(교무처)
- 이수후 학점신청 : 외국대학 성적증명서, 학점인정 방식 및 수강과목 개요서 및 번역문 첨부하여 소속학과(부)에 제출(학생) → 심사(학과, 대학, 국제협력실) → 학점인정(교무처)

<별지 제2호 서식>

외국대학 취득학점 신청서

구 분	인 정 교 과 목(학 기 구 분)		비 고
	년도 학년 학기	년도 학년 학기	
교양학점 ()학점			
영역교양 ()학점			
전공학점 ()학점			
일반선택학점 ()학점			
학점계			
파견기간 :		파견대학 :	

- ※ 연수대학 성적은 성적증명서상에 해당년도, 학년, 학기의 교양학점, 전공학점, 영역교양, 일반선택학점으로만 표시된다.
- ※ 졸업사정시 파견학기의 필수에 대한 교육과정상의 미필은 사정하지 않음.
- ※ 졸업사정시 인정학점은 졸업학점에 인정교양학점 및 인정전공학점은 졸업교양학점 및 졸업전공학점에 가산한다.
- ※ 학기별 인정학점 총계는 해당학과의 수강신청 제한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- ※ 인정교과목은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표기하며 본교에서는 학점으로만 인정한다.

년 월 일

심사위원 확인		

학과(부)장 _____ (인)

교무처장 귀하